



“국민의 신뢰를 받는 원전산업으로 거듭난다” 「원전감독법」 시행 의의와 주요 내용

김영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장



- 서울대 금속공학 학사
- 한국방통대 법학 학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캐나다 McMaster University 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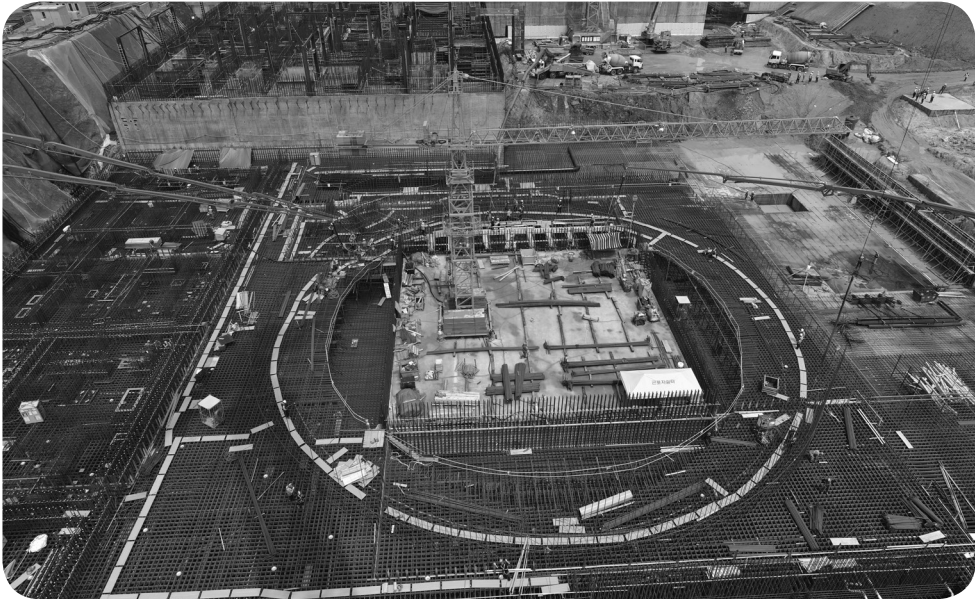
-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사무관
-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과장(14~)

국내 원자력 발전은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원자력 발전 산업은 유가 변동과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져갔다. 정부는 원전산업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잦은 원전 정지, 품질 서류 위·변조, 납품 비리, 사이버 위협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었다.

특히, 2013년 발생한 원전 제어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은 시험·인증기관 자체가 위조의 주체가 된 점과 비상시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안전 장치인 제어 케이블의 성적서를 위조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비리를 구조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13.6월,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원전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개선방안」(13.10월, 원전산업정책협의회) 등을 발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였다.



「원전감독법」 시행을 통해 산업부는 법령에 따라 원전 공공기관의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한층 더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원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원전 공공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원전비리 종합대책’에 따른 개선 대책 이행

「원전비리 종합대책」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는 크게 ① 원전산업계의 구조적 유착 관계 근절, ② 구매 제도 구조 개선, ③ 품질·검증 시스템 구조 개선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였다.

① 원전산업계의 구조적 유착 관계 근절

원전산업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소수 업체와 거래 및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으며, 원전의 특수성에 따른 폐쇄적 문화는 원전업체의 구조적 유착 관계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유착 관계 근절을 위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 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고, 퇴직

자를 고용한 협력 업체에 대해 입찰 적격 심사 감점을 부과하였다. 또한, 외부 인사 영입 등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한수원의 인사·조직 등 경영 진단을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② 구매 제도 구조 개선

한수원 등 원전산업계의 구매 조직이 기술적 우위를 갖추지 못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부품업체 참여 기업 폭이 좁아 상호 경쟁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구매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기를 보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의계약 최소화과 구매 계획 사전 공개 등 입찰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③ 품질·검증 시스템 구조 개선

그간 품질·검증 시스템에 대한 느슨한 관리와 품질 검증 기관과의 유착 가능성 상존, 한수원 내 구매 부서의 품질 검토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 등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시험 기관의 시험 성적 결과 재검증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시험·검증 기관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정부는 종합 대책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을 통해 원전산업의 안전성·투명성 강화와 비리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다.

원전의 전반적 품질 관리와 정비·운영을 개선하고, 원전 공공기관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쇄신함으로써 원전

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원전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하고자 노력하였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 「원전감독법」) 시행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원전산업 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 「원전감독법」)이 마련되었으며('14.12.30. 공포), '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표 1> 「원전감독법」상 원전 공공기관 의무 주요 내용

원전 공공기관 의무	주요 내용
1. 구매·계약 관리	· 수의계약 최소화, 부정당 업체 제재, 구매 정보 사전 공개 강화 등
2. 조직·인사 관리	· 주기적 조직 건전성 진단·개선,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 수립 등
3. 원자력 발전 시설 관리	· 정비 과정 투명성 확보, 정비업체 감독 강화, 설비 투자 계획 수립 등
4. 국민 소통·참여	· 건설·운영 관련 정보 공개, 주민 참여 제도 운영

<표 2> 「원전감독법」상 주요 행위 제한 및 제재 사항

구분	법률상 행위제한	벌칙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	·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 재산 등록·취업 제한 적용	「공직자윤리법」 적용(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사익·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 제공 금지	최대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영리 업무 겸직, 관련 협력체 투자 금지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
	· 형법상 공무원 의제 및 뇌물죄 등 가중 처벌	형법의 1/2까지 가중 처벌
협력업체	· 뇌물 수뢰, 서류 위변조, 퇴직자 고용, 부정한 정보 취득·이용 금지	①원전 공공기관 입찰 제한 ②과징금·가산금 ③형벌(징역, 벌금)



동 법률은 원전 공공기관의 의무 사항과, 원전 공공기관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을 제공하는 협력 업체의 위반 행위 및 제재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의무 이행 대상 원전 공공기관은 한수원, 한진,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이다.

법률에 따라 원전 공공기관은 구매·계약의 관리, 조직·인사 관리, 원자력 발전 시설 관리 및 국민 소통·참여 등 안전·투명 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원전 공공기관 간 공통의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해야 한다.

또한 원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재산 등록, 퇴직자 취업 제한, 부당한 정보 제공·이용 및 영리 업무 금지 등 윤리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법령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형법상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및 형법상 형벌의 1/2까지 가중 처벌하고 수뢰액의 5~10배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공공기관의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원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 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취업이 금지된 원전 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및 담합, 불법 하도급, 보안 사항 위반에 따른 사이버 침해·자료 유출 사고 등의 행위에 대해 입찰 제한, 과징금, 벌칙 등이 부과된다.

특히, 입찰 제한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제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과징금, 벌칙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법령 대비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변조했을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원전

공공기관에 입찰이 제한되고, 관련 매출액(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제재 강도가 높은 것은 그간 발생한 여러 원전 비리로 인해 원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불편·불안을 초래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원전 공공기관은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산업부에 운영 계획, 공통의 경영 목표, 윤리 감사, 운영 성과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부는 계획의 적정성과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관리·감독하게 되며, 이행이 미흡할 경우에는 시정·개선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결어

「원전감독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원전 공공기관의 협력 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부는 법령 이행을 위한 원전 공공기관 내규 정비와 협력 업체에 내용 안내 및 준비 등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계도 기간 중에는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 등을 배포하여 협력 업체의 법령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이행을 당부할 계획이며, 「원전감독법」에 따라 새로 규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해 경고 조치를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원전감독법」 시행을 통해 산업부는 법령에 따라 원전 공공기관의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한층 더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원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원전 공공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